

第 18 回 臨時會

2005. 9. 2(金)

檢 討 報 告 書

계룡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

鷄 龍 市 議 會

專門委員 金 泳 鎮

- 계룡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 -

檢 討 報 告

□ 改定背景

-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(6. 30 ⇨ 5. 31)의 변경으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국민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主要內容

-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2005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.(안 제26조의 2)
- 적용시한 : 이 조례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.

□ 檢討意見

- 본 개정 조례안은, 지방세법 제7조, 제8조, 제9조를 근거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(6. 30 ⇨ 5. 31)의 변경으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국민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고자하는 것으로 그 개정취지가 인정되며,
-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, 시행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